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55
----------	-------

발의연월일 : 2026. 5. 13.

발 의 자 : 김 건 · 이소희 · 김민전
김태호 · 최보운 · 김기웅
한지아 · 안철수 · 김미애
김석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외교·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하게 하기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두고 있고, 해당 재외공관에는 공관 사무의 총괄 및 소속 공무원의 지휘·감독을 위해 재외공관장을 두고 있음.

그런데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사건, 중동전쟁 등 최근 연이은 해외 사건·사고에서 재외공관이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그 주요 원인으로 재외공관장의 공석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장의 후임자 임명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해당 공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하거나 공관의 장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하는 날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외공관장 공석 문제를 해소함과 아울러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공관장의 후임자 임명 등) ① 임용권자는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하거나 재외공관의 장이 정년에 이르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하는 날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른 날까지 후임자를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하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후임자를 내정하여야 한다.

1. 징계 사유로 소환되는 경우
2. 인사관리상 또는 외교적으로 긴급한 경우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하는 경우에는 후임 공관장 임명 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관장의 후임자 임명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하거나 재외공관의 장이 정년에 이르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27조의2(공관장의 후임자 임명 등) ① 임용권자는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하거나 재외공관의 장이 정년에 이르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하는 날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른 날까지 후임자를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하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후임자를 내정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징계 사유로 소환되는 경우</u> <u>2. 인사관리상 또는 외교적으로 긴급한 경우</u> <p><u>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하는 경우에는 후임공관장 임명 일정 계획을 수립</u></p>

하여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